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그에 대한 정보접근권의 중요성

: 위민 온 웹 사건을 중심으로

류민희

I. 소개

한국은 형법 낙태죄에 대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¹⁾과 결정에서 실시한 입법기한²⁾ 도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되었다. 임신중단을 포함한 개인의 재생산적 결정이 도덕이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결정의 권리이자 공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의료와 건강의 권리로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2019년 4월 11일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이름으로, 특히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을 진입점으로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미흡하나마 논의되고 보장되어 왔다. 오히려 ‘낙태죄’ 비범죄화는 이제 우리가 관련된 권리의 문제를 성과 재생산 건강의 권리의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권리체계 미비의 유산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국가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료체계에서 다양한 난맥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의 권리 중 하나인 포괄적 성교육은 공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생산 의료 정보는 사적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면 여전히 잘 유통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정보를 제공했던 저 국가가 검열을 하는 일도 발생했고 이것이 오늘 대화의 계기가 된 위민 온 웹 (Women on Web) 사건이다.

이번 발제에서는 무분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 차단 의 맥락 위에 놓여있는 한 외국 홈페이지의 차단이 여성의 건강과 삶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교차적인 권리 침해의 맥락을 살펴보고,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정보 접근성과 관련해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소극

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2) 주문에서 실시한 입법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적 의무와 이행하여야만 하는 적극적 의무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 위민 온 웹

1. 위민 온 웹

위민 온 웹은 네덜란드 의사 레베카 고퍼츠가 중심이 되어 2005년 설립한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이며 동시에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이름이다. 위민 온 웹 홈페이지는 안전한 임신중지(safe abortion)나 피임에 대한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을 하기도 한다. 위민 온 웹 홈페이지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헝가리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터키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되며 한국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제공되었다.

2.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와 관련 정보

위민 온 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생산 의료정보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도 포함한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경구피임약의 개발 이후 재생산 건강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로 일컬어지며 현대 여성의 삶을 크게 바꾸었다.

초기 임신중지에 있어서는 침습적인 외과적 의료가 필요하지 않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매우 안전하며 효과적이다.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의 지리적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서는 충분한 의료적 조언 하에 임신중지 접근성을 늘일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독립적 공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임신중지(self-managed abortion)로서 중요한 재생산적 결정에 있어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며 결정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 또한 크다.

임신중지유도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은 1980년대에 개발되어 프랑스에서 1987년, 영국에서 1991년, 미국에서 2000년 사용허가 되었고, 미소프리스톨과 함께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포함되었다. 필수약품 목록은 보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선정하는 문서로, 1977년 처음 발간되어 2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이 목록은 각 국가에게 의료체계에서 의료인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기준을 제시한다.

3. 위민 온 웹 홈페이지의 역할

임신중지는 어디서나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재생산의료 서비스이지만 국가마다 법제가 상이했고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의약품의 공식적 도입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안전한 초기 임신중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았다. 위민 온 웹 홈페이지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과 접근 불균형에 시달리는 전세계 여성들에게 재생산 건강과 현재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전령사의 역할을 했다. 알지 못한다면 권리의식이 생길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이 홈페이지의 기여에 대한 여럿 연구결과가 존재하며³⁾ 많은 국가에서 임신중단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변화도 이끌었다. 특히 코로나 체제에서 많은 국가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⁴⁾ 최근 더 주목받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4. 한국에서의 차단 처분

그러던 중 2018년 무렵 한국에서는 위민 온 웹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조치 요청을 한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21년 4월 현재까지 이 상태는 유지되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이 홈페이지가 차단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 뿐이다.

일단 이 홈페이지의 본질을 살펴볼 때 최소한 전체 차단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소유자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이 조치를 달리할 수 있었다.

3) Gomperts, R., Van Der Vleuten, K., Jelinska, K., da Costa, C. V., Gemzell-Danielsson, K., & Kleiverda, G. (2014). Provision of medical abortion using telemedicine in Brazil. *Contraception*, 89(2), 129-133.

Les, K., Gomperts, R., & Gemzell-Danielsson, K. (2017). Experiences of women living in Hungary seeking a medical abortion online. *The European Journal of Contraception & Reproductive Health Care*, 22(5), 360-362.

Aiken, A. R., Guthrie, K. A., Schellekens, M., Trussell, J., & Gomperts, R. (2018). Barriers to accessing abortion services and perspectives on using mifepristone and misoprostol at home in Great Britain. *Contraception*, 97(2), 177-183.

4) 이유림. (2020). 코로나19와 임신중지

한편 ‘자유권’이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의 자유에도 적극적 측면이 있으며 그것이 정보접근권이 다. 이 홈페이지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했어야 하는 표현에 속하기도 한다. 국가행위자가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기본권 실현에 노력했던 사인에게 국가는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정보를 접할 수 없는 한국 여성들에게 돌아왔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여성의 삶의 선택과 가능성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관련하여 공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오랫동안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의 맥락에서 단편적으로만 제공되었다.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던 해외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면서, 홈페이지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도 부당하게 제한하고 동시에 한국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 위민 온 웹 사건의 핵심이다.

III. “이미 존재했던 권리를 살펴보는 새로운 렌즈”: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1. 개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교육권, 반차별의 권리, 고문과 부당한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복합적인 인권과 관련이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서비스, 재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고, 정보의 접근가능성은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일반과 관련 되는 정보 및 생각들을 찾고, 받고, 유포할 권리를 포함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특정 건강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2. 규범적 범위

일반적으로 ‘SRHR’이라는 영어 줄임말로 불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서로 중첩되는 4개의 영역을 의미한다. 1960년대 여성 건강 운동의 담론이 풍부해지고 각 국가에서 낙태법의 자유화 혹은 완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이론적 틀거리가 만들어졌다. 1968년 테헤란 국제인권회의 최종결의서 제16조에서 “부모는 자유롭고 책임 있게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명시되었으며 1970년대, 1980년대 기타 국제회의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재생산적 자

기결정권과 자율권을 구성하던 개념에서 더 넓은 개념을 발전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반해 관련 서비스는 권리가 아닌 국제 인구정책의 이름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 흐름이 만난 것이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국제회의로서 재생산권이 국내법, 국제인권협약 및 기타 합의문서에서 이미 인정된 인권을 포함한 개념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 이후 현재까지 유엔 조약기구, 특별절차, 지역인권재판소, 각국 최고재판소 등의 판례, 해석 등을 통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틀거리가 구체화된다.

카이로에서는 재생산 건강에 성적 건강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개념은 그 목적이 오직 출산이 아닌 섹슈얼리티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성적'과 '재생산'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접근이다. 개념의 출발 자체가 이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건강과 권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규범에서 생명권, 건강권, 고문으로 자기결정권, 본질적으로 다뤄지던 권리의 내용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틀거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수 있다.⁵⁾

범주	세부 내용	비고
생명권, 생존, 안전과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권리	생명권과 생존의 권리	- 기본적인 산부인과 관리를 받을 권리 - AIDS/HIV 관련 처치를 받을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보호될 권리 - 여성의 성기 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비밀 유지의 권리 - 강제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공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낙태 혹은 단종 시술 금지, 성적 고문 금지.
재생산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자유로운 모성선택과 관련된 권리	아이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사생활과 가족 생활의 권리	- 강제 단종시술을 거부할 권리 - 원하지 않은 임신을 종결할 권리 - 임신과 낙태와 관련하여 남녀 파트너 사이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 - 유럽 위원회는 1980년의

5) 하정옥. (2013).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34(1), 183-210.

		결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합법적 낙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아내에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 할 수 없도록 함.
	결혼하고 가족을 꾸릴 권리	- 가족을 구성하고 가족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 가족 생활의 복리를 위해서는 모성 건강을 지키고 모성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 - 청소년의 조혼을 방지하여 이들의 신체적·감정적·지적 성숙을 보장
	모성 보호 일반 및 고용 기간 동안 모성 보호의 권리	고용 관계에서의 모성 보호를 통해 자기 결정과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 보장
건강 및 과학적 진보의 혜택과 관련한 권리	가장 높은 기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재생산 건강 관련 자원의 다음을 보장할 권리 - 이용가능성(availability), -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수용 및 적용가능성(acceptability), - 질(quality)
	과학적 진보의 혜택 권리	재생산 건강에서도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와 시설은 당대의 가장 진전된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재생산 건강과 관련하여 갖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다음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부당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의 성별 - 결혼지위 - 연령 - 성적 지향 혹은 인종적 정체성 -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보와 교육,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리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권리	피임 지식과 수단을 전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표 1 Cook, R. J., Dickens, B. M., & Fathalla, M. F. (2003). Reproductive Health and Human Rights: Integrating Medicine, Ethics, and Law: Integrating Medicine, Ethics, and Law. Clarendon Press. 하정옥. (2013).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34(1), 183-210.에서 재인용

이렇게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예전에 흔히 이야기되었던 ‘자유권과 사회권의 분리’나 이원론이 실제 권리 주체의 삶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관념적 허구였다는 점을 옹변한다.⁶⁾ 우리의 재생산적 결정은 국가나 사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진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와 국가의 의무

비록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실현에의 노력은 즉각적이어야 하며 분명한 권리 실현의 최고 기준은 존재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혹은 특별절차 중 교육, 건강, 주거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은 4A(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daptability), 혹은 AAAAQ 체계 하에 사회권적 권리의 내용을 분설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제22호 논평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자유와 권리의 집합을 포함하는데 자유에는 자신의 신체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안에 대해 폭력·강압·차별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권리에는 사회권규약 제12조에 따른 모든 개인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건강관련 시설, 재화, 정보 일체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포함된다고 하며 권리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6) 이주영. (2019).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자유권·사회권 이분론을 넘어. 노동법연구, (46), 223-257.

A.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

11.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14호에서 상술한 것에 덧붙이자면, 포괄적 성과 재생산 건강 보전은 아래의 4가지 상호연관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용가능성

12. 가능한 최고 범위의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서비스, 재화 및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한 음용수와 충분한 위생시설, 병원, 치료소 등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실현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의 보장을 위한 시설, 재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의 보장이 포함된다.

13.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전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전문인력과 숙련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용가능성의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콘돔 및 응급피임약,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돌봄에 필요한 의약품, 성병 및 HIV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복제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등 폭넓은 범위의 피임수단을 포함한 필수약품 또한 이용가능해야 한다.

14. 양심적 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등 사상에 기반한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공적·사적 시설에서 항시 이용가능해야 하며 합리적인 지리적인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접근가능성

15.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20]에 모든 사람과 집단이 차별과 제약 없이 접근가능해야 한다. 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접근가능성에는 물리적 접근성, 구매가능성, 그리고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된다.

물리적 접근성

16.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물리적 및 지리적 거리 안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가능성은 특히 벽·오지에 사는 사람들, 장애인, 난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구금된 사람들 등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성과 재생산 서비스를 벽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실질적 평등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의료서비스와의 연락 및 교통을 보장하는 적극

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구매가능성

17. 공적, 사적으로 제공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매가능해야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들과 관련있는 것 등 필수재화 및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 부당한 의료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비용과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대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의 접근성

18. 정보 접근가능성은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일반과 관련되는 정보 및 생각들을 찾고, 받고, 유포할 권리를 포함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특정 건강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 및 집단은 모성건강, 피임제, 가족계획, 성병 및 HIV 예방,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돌봄, 불임 및 불임치료, 재생산 관련 암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개인 및 공동체의 수요 (예: 연령, 성별, 언어능력, 교육수준,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인터섹스 지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은 사적인 건강기록과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수용가능성

20.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모든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는 개인, 소수자, 사람들 및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성별, 연령, 장애, 성적 다양성, 그리고 생애주기 필요사항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집단에 대해 맞춤형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질

21.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있는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는 반드시 양질의 것, 즉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최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숙련된 의료인력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이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 및 기구를 필요로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낙태를 위한 의약품[22], 재생산 보조기술, HIV/AIDS 치료수단에 있어서의 개선사항 등 기술적 개선혁신사항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이에 실패하는 것은 돌봄의 질을 위태롭게 한다.

한편 국가의 핵심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설하였다.

핵심 의무사항

- (a) 성과 재생산 의료시설, 서비스, 재화 및 정보에 대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법, 정책, 관습들을 폐지하거나 철폐할 것;
- (b)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안된, 이러한 절차로부터 주기적인 검토 및 감독을 받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채택 및 실시할 것;
- (c) 특히 여성 및 불리하고 소외된 집단을 위해 구매가능한, 허용가능한, 양질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재화, 시설로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 (d) 개인의 성과 재생산 관련 요구 및 행동양식에 대한 사생활 및 비밀보장, 그리고 (강압, 차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 여성성기절단, 아동 및 강제결혼, 부부간간 등 가정·성폭력과 같은 해로운 관습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법적 금지를 제정 및 집행할 것;
- (e)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낙태 후 의료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할 것;
- (f)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로 접근을 보장할 것;
- (g)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약품목록에 따른 약물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설비, 기술을 제공하고;
- (h)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적 및 법적 구제조치 및 보상을 보장할 것;

IV.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낙태죄’라는 재생산적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의 일부분이다. 이것이 제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행정주체들을 통해 여전히 다양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소극적 침해를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의 핵심의무에 대해 적극적 실현할 책임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돌발적인 하나의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권리 침해가 보여준 징후

이다. 고퍼츠 의사는 본 웹페이지에 들어오는 각종 상담들의 통계를 보며 사람을 살리는 정보 (life-saving information)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혹시 있을 이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납작하게 최소화된 의미로 표현의 자유만 다뤄질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여성들의 정보접근권, 건강권, 생명권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끝.